

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안설명

- 존경하는 선배·동료 위원님 여러분!
이 현 찬 의원입니다.
「서울특별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에 대해 제안설명을
드리고자 합니다.
- 「지방세법 시행령」 제71조제3항에서는
담배소비세 성실 납세의무자에게 납세담보금액을 조례로
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, 시행령 개정 후 6년이
경과한 현재까지 납세담보금액 감면 근거가 본 조례에
마련되지 않고 있습니다.
- 따라서 지방세 납세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측면에서
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금액을 감면할
수 있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.
- 보다 자세한 사항은
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며,
개정안의 취지를 잘 살피셔서 만장일치로
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감사합니다.